

# 국내거래 원자재의 거래일자 확인방법 개선

- 관세청 -

관세청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업체에 공급된 원자재에 대한 기납증을 발급할 때 물품수령증상의 인수일을 기준으로 발급하던 것을 원자재의 실제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발급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96. 7.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현재 기납증발급시 공급물품의 양도(매입)일자는 물품수령증명서상의 인수일자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다.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로칼매입하고자 할 경우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그 내국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원자재를 공급하면 물품수령증을 발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나 수출업체의 거래관행상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 전에 원자재를 미리 공급받아 물품을 제조·수출한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물품수령증을 발급하고 있어 원자재의 실제공급일과 물품수령증상의 인수일은 약 2~3월간 차이가 있게 된다.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할 때 원자재의 수입(매입)일이 제품의 수출일보다 앞서야 되나 통상 실제거래일보다 물품수령증상 인수일이 2~3개월 늦게 발급하는 업체의 관행을 고려하여 관세환급 서류상 선수출·후매입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납증상의 매입일(물품수령증상의 인수일)이 수출일보다 3개월이내에서 늦은 경우에는 환급을 허용하여 왔다.

따라서 로칼매입한 원자재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3월 범위내에서 선수출·후매입을 허용하므로써 환급특례법의 규정에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관세환급업무를 전산화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어 '96. 7. 1부터 기납증을 발급할 때 물품수령증상의 인수일이 실제공급일과 다를 경우 실제공급일을 매입일로하여 기납증을 발급토록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원자재매입일이 제품수출일보다 3개월이내에서 늦은 경우에도 환급을 허용』하던 것을 폐지토록 하였다.

앞으로 '96. 7. 1이후 로칼거래된 원자재에 대하여 기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업체는 물품수령증상의 여백에 실제 공급일자를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되고 제출서류등 기타 사항은 종전과 동일하다. ◉